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3
----------	------

발의연월일 : 2024. 8. 16.

발의의원 : 전홍배 의원,

박주용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거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내 거주외국인 관련 연구에서 도출된 정보접근성 필요성에 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 나. 지원의 범위 확대(안 제6조)
- 다. 수당지급 대상 명확화(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을 “달성군”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라 함은” 을 각각 “란” 이라 한다.

1. “외국인” 이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거주외국인” 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주민” 을 “지역주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달성군수”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군의 책무)” 를 “(군수의 책무)” 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나” 를 “어느 하나” 로, “자를” 을 “사람을”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입국관리법」”을 “법”으로, “의해”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외국인 가정

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 외국인”을 “제5조 각 호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 거주외국인의”를 “그 밖에”로, “사업등”을 “사업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지능정보화 교육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군을 관할하는 교육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주무 부서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되”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여비를”을 “여비 등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업무”를 “제5조 각 호 지원대상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후단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u>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u>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u>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달성군</u>----- -----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u>외국인</u>” 이라 함은 <u>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u>를 말한다.</p> <p>2. “<u>거주외국인</u>” 이라 함은 <u>입국 후 90일을 초과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u>을 말한다.</p> <p>3. “<u>외국인 가정</u>” 이라 함은 <u>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u>과 <u>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 ---.</p> <p>1. “<u>외국인</u>” 이란 「<u>출입국관리법</u>」(이하 “<u>법</u>” 이라 한다)제 <u>2조제2호</u>를 따른다.</p> <p>2. “<u>거주외국인</u>” 이란 <u>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u>을 말한다.</p> <p>3. “<u>외국인 가정</u>” 이란 <u>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u>과 <u>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u>를 말한다.</p>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생략)

<신설>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당초 외국인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4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의 책무) ①(생략)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
-----어느 하나-----
- 사람을 -----.
----- 법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 가정

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4. 그 밖에-----
----- 사람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

지역주민-----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신 설>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을 관할하는 교육청·경찰서·고용지원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제5조 각호 지원대상-----
-----.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지능정보화 교육
6. 그 밖에 -----

----- 사업의 시행

② ----- 제1항에 따른 -----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군을 관할하는 교육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주무 부서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 3. (생략)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간사) ① (생략)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되, -----
-----.

제8조(자문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1조(간사)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
-----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
----- 범위에서 -----

----- 여비 등을 -----
-----.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

----- 제5조 각 호 지원대상에 대한 제6조제1항에 따

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 ① (생략)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6조(포상) ① (생략)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금과 부상을 제외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른 지원업무-----.

② --- 제1항에 따라 -----
----- 범위에서 -----
-----.

제15조(세계인의 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그 밖의 -----
----- 사람 -----
-----.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